

제32호

행정명령

뉴욕주 농산물에 대한 주정부 식품 구매 목표 수립

뉴욕의 농업 산업은 뉴욕주의 역사, 경제 및 미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공급망의 취약성은 주 내 식량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농장을 지원하고 경제적 생존력을 유지하는 것은 공급망의 탄력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뉴욕의 농업 부문이 직면한 당면과제는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통제를 벗어난 국제적 발전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뉴욕주의 비옥한 토양, 물 가용성, 활기찬 농업 공동체, 우수한 토지 보조금 제도, 크고 다양한 시장 덕분에 뉴욕주는 식량 조달 정책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공평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뉴욕에서 재배, 수확 또는 생산된 식품 및 식품 제품에 대한 주정부 기관 구매 목표를 수립하고 교육구에 뉴욕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더 큰 재량권을 부여하는 일반 지방 자치법의 개정은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주 전체에 걸쳐 보다 탄력적이고 공평한 식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로써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I. 정의

- A. "주정부 기관"은 주지사가 집행 권한을 갖는 모든 기관 또는 부서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모든 사무소와 부서와 주지사가 의장, 최고 경영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를 임명하는 모든 공공 기관(뉴욕 및 뉴저지 항만청 제외)이 포함됩니다. 주정부 기관에는 뉴욕주립 대학교와 뉴욕 시립 대학교가 포함됩니다.
- B. "뉴욕주 식품"은 뉴욕주에서 재배, 수확, 생산 또는 가공되는 농산물 및 식품을 의미합니다. 주 내부 및 외부의 원료로 구성된 가공 식품은 (i) 주된 가치 또는 수량이 뉴욕주에서 재배, 수확 또는 생산된 식품에서 파생되고 (ii) 이러한 식품 제품이 뉴욕주에 위치한 시설에서 가공되는 경우 뉴욕주 식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C. "농산물 및 식품"에는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주 기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금 흐름을 사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소비하는 모든 식품 또는 음료가 포함됩니다.

II. 주정부 기관을 위한 뉴욕주 원천 식품 조달 목표

- A. 즉시 발효되는 계약 서비스를 포함하여 주 기관이 식품 또는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a) 해당 주 기관은 가능할 때마다 뉴욕주 식품의 구매를 명시하고 이렇게 구매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b)(i) 2023년 말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주 기관의 식품 또는 식품 제품 구매의 5%는 뉴욕주 식품이어야 하고, (ii) 2024년 말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주정부 기관의 식품 또는 식품 제품 구매의 15%는 뉴욕주 식품이어야 하고, (iii) 2025년 말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주 기관의 식품 또는 식품 제품 구매의 20%는 뉴욕주 식품이어야 하고, (iv) 2026년 말 또는 그 이전에는 해당 주 기관의 식품 또는 식품 제품 구매의 25%가 뉴욕주 식품이어야 하며, (v) 2027년 말 또는 그 이전에는 해당 주 기관의 식품 또는 식품 제품 구매의 30%가 뉴욕주 식품이어야 합니다.
- B. 일반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General Services)은 중앙 집중식 식품 계약에 해당 계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뉴욕주 식품이 강조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C. 식품을 구매하는 주 기관은 계약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고 주 정부가 구매한 뉴욕주 식품의 달러 금액, 주 기관이 구매한 모든 식품 및 식품 제품에 대한 달러 가치, 보고 연도에 구매한 모든 농산물 및 식품 중 뉴욕주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매년 일반 서비스 사무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정부 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해당 정보를 일반 서비스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D. 식품이나 식품 제품을 구매하는 주 기관이 위에 명시된 비율만큼 뉴욕주 식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 기관은 뉴욕주 식품을 필수 최저 수준으로 구매하지 못하게 된 사유와 뉴욕주 식품 구매를 최소 요구 기준액까지 늘리기 위해 취할 모든 조치를 주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E. 2023년 10월 30일까지 일반 서비스 사무국과 농림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는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중독 서비스 및 지원 사무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정신 건강 사무국(Office of Mental Health), 발달 장애인 사무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노인 사무국(Office of the Aging) 및 뉴욕주 식품의 식별, 계약, 구매에 직접 또는 식품 서비스 계약업체를 통해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실무 그룹을 구성하고 소집하여 직접 또는 식품 서비스 계약업체를 통해 뉴욕주 식품을 식별, 계약, 구매하도록 합니다. 해당 실무 그룹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뉴욕주 식품의 구매 증가를 위한 기회와 장벽을 식별하고, (2) 주 기관이 구매하는 뉴욕주 식품의 양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침을 권장하고, (3) 숨겨진 식품 생산 비용을 고려하고 조정하는 주 식량 조달 모델을 채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점과 타당성을 분석하며, (4) 본 행정 명령에 의해 수립된 목표 달성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요건을 권장합니다.
- F. 지방 정부와 학군은 연간 식품 및 식료품 구매액의 30%까지 뉴욕주 식품 구매 비율을 늘리려는 뉴욕주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